

의안번호	2205118
의 퇴 인	김태년 의원
회 답 일	2025.1.21.
추 계 번호	24B47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공단이 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급여신청일 30일이 지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우선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45~1,986억원, 2030년에 51~2,256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239~1조 593억원(연평균 48~2,119억원)으로 추계됨
- (시나리오1) 첫 번째 시나리오는 산재급여 우선보장제도의 시행에도 산업재해 급여 신청자의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재정소요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897억원, 2030년에 1,019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4,783억원(연평균 957억원)으로 추계됨
 - 시나리오1에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산재급여 우선 지급 후 최종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미환수액이 해당함
 - 다만, 개정조항에 규정된 “요양이나 생계보전 등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을 고려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45~90억원, 2030년에 51~102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239~478억원(연평균 48~96억원)으로 추계됨
- (시나리오2) 시나리오2와 시나리오3은 우선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산업재해 신청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한 추가재정소요이며, 이 중 시나리오2는 산업재해 수급자 수가 2023년 대비 10% 증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로, 2026년에 1,541억원, 2030년에 1,750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8,218억원(연평균 1,644억원)으로 추계됨
 - 시나리오2에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산재급여 우선 지급 후 최종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미환수액으로, 시나리오1에 비해 산업재해 신청 물량이 확대되기 때문에 미환수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요양이나 생계보전 등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을 고려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77~154억원, 2030년에 88~175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411~822억원(연평균 82~164억원)으로 추계됨

- (시나리오3) 우선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산업재해 신청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한 재정소요로, 산재보험 급여 신청물량의 증가율을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산재 신청 사업주 날인제 폐지 도입에 따른 신청증가율(16.9%¹⁾)을 준용하여 산출한 재정소요이며, 이때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1,986억원, 2030년에 2,256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조 593억원(연평균 2,119억원)으로 추계됨
 - 시나리오3에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산재급여 우선 지급 후 최종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미환수액으로, 산재 신청 사업주 날인제 폐지 도입에 따른 신청증가율을 준용하여 산출
 - 따라서 개정안의 도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우선보장제도의 도입에 따른 산재보험 급여 신청증가율과 환수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요양이나 생계보전 등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을 고려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99~199억원, 2030년에 113~226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530~1,059억원(연평균 106~212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추가재정소요(A1)		897	926	956	986	1,019	4,783	957
필요성 고려	5%(B1=A1×5%)	45	46	48	49	51	239	48
	10%(C1=A1×10%)	90	93	96	99	102	478	96
시나리오2								
추가재정소요(A2)		1,541	1,590	1,642	1,695	1,750	8,218	1,644
필요성 고려	5%(B2=A2×5%)	77	80	82	85	88	411	82
	10%(C2=A2×10%)	154	159	164	169	175	822	164
시나리오3								
추가재정소요(A3)		1,986	2,050	2,116	2,184	2,256	10,593	2,119
필요성 고려	5%(B3=A3×5%)	99	102	106	109	113	530	106
	10%(C3=A3×10%)	199	205	212	218	226	1,059	212

1) 자료: 고용노동부

주: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 1회차 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대한 통계가 아닌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접수에 따른 처리현황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통계청 승인 통계)와 다를 수 있음

- 주: 1. 개정안의 도입에 따른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는 산재급여 우선 지급 후 최종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미환수액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향후 산재보험의 신청건수의 변화와 승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개정안의 도입에 따른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는 산재급여 우선 지급 후 최종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미환수액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환수율의 변화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산재 신청증가율은 증가하지 않는 경우, 10% 증가하는 경우, 산재 신청 사업주 날인제 폐지 도입에 따른 신청증가율을 준용하여 산출하였으므로, 향후 산재보험 급여에 대한 신청증가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5. 향후 수가인상률의 변화 및 수급자의 임금변화 및 임금분포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6. 국가의 우선 지급과 산재기금으로부터의 재원 이전 사이의 시차와 관련한 기금 운용으로 인한 기회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본 추계서는 산재보험료의 지급과 환수 사이의 시차로 인한 기회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7. 본 추계서의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급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하여 우선지급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신청 증가율 이외의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최근 산업재해 수급자 수의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자연증가로 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8 “요양이나 생계보전 등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8조의2(역학조사의 실시)	공단은 근로자의 질병과 유해·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제1항)	의무규정
		공단은 보험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	안 제82조의2(보험급여의 우선 지급)	공단은 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 급여신청일 30일이 지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로서 요양이나 생계보전 등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의 일부(이하 “우선지급금”이라 한다)를 우선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1항에 따른 우선지급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게 우선지급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우선지급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을 하여야 함(제3항)	
		공단이 제3항에 따라 우선지급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제4항)	
		우선지급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함. 이 경우 “보험급여”는 “우선지급금”으로 봄(제5항)	
		그 밖에 우선지급의 요건, 신청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3	안 제82조의3(우선지급금의 환수)	공단은 우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지급금을 환수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우선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8조의2(역학조사의 실시)	—	- 미대상 - 개정안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2	안 제82조의2(보험급여의 우선 지급)	○	개정안의 시행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우선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3	안 제82조의3(우선지급금의 환수)	—	• 미대상 – 개정안은 보험급여 우선지급 후 산재불승인 처분이 있을 시, 지급한 급여의 환수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조항으로 산재기금 등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수입의 순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²⁾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안이 아님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³⁾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가 다음 재해조사 기간⁴⁾을 초과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내용임
 - 개정안은 공단으로 하여금 산재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면, 추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으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2024.11 기준)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명목임금상승률(%)	3.2	3.6	3.9	3.8	3.8	3.8	3.8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3조의2(재해조사의 실시) ⑦ 재해조사의 기간은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로부터 돌려받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국가의 우선 지급과 산재기금으로부터의 재원 이전 사이의 시차와 관련한 기금 운용으로 인한 기회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며, 본 추계서는 산재보험료의 지급과 환수 사이의 시차로 인한 기회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개정안의 시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우선지급제도가 시행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우선 지급대상에 대한 산재보험금이며, 개정안에 규정된 ‘산재보험 우선지급제도’의 대상은 급여신청일 30일이 지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임
- 따라서 본 추계서에서의 추가재정소요의 산출 대상은 ‘급여신청일 30일이 지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산재보험금 지급액임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되는 산재보험금 지출액으로, 본 추계서는 급여의 성격을 고려하여 요양급여⁵⁾ 및 휴업급여⁶⁾에 한하여 산출
 - 향후 근로자의 부상 정도 등에 따라 요양기간 및 평균급여액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 자료의 부재로 이러한 요인에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가정
 - 또한 2023년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코드: 7084-104), 기관운영경비(코드: 7084-204), 청사임차비(코드: 7084-206)를 지원받고 있어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현

-
- 5)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 6)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재 근로복지공단의 행정력 범위 내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가정

가. 총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신청건수에 지원단가 및 지급일수를 적용하여 산출

- (신청건수) 개정안에 따른 산재보험우선지급제도의 지급대상은 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 급여신청일 30일이 지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2023년 기준 산재보험 우선 지급제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평균 신청 건수를 토대로 산출

[표 2] 산업재해(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수급자 수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급여신청일 30일이 지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29,973	29,310	36,101	39,927	44,664

자료: 고용노동부

- 산재급여 우선보장 도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에 있어 개정안의 도입에 따른 지급건수의 증가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산업재해는 ‘재해’라는 원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보장제도의 도입이 수급자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개정안의 시행으로 산재 급여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제도 사용의 편의성이 제고되어 산재보험 급여 신청 물량이 증가할 수 있음
- 본 추계서는 장래에 발생할 산업재해(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건수를 시나리오별로 나누어 산출
 - 시나리오1 : 우선보장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신청자의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 시나리오2: 우선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산업재해 신청자의 수가 10% 증가할 경우
 - 시나리오3: 우선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산업재해 신청자의 수가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산재 신청 사업주 날인제 폐지 도입에 따른 신청증가율(16.9%⁷⁾)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로, 2023년 기준 “급여신청일 30일이

7) 자료: 고용노동부

주: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 1회차 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대한 통계가 아닌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접수에 따른 처리현황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

지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건수에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산업재해 신청 사업주 날인제 폐
지 도입에 따른 신청증가율을 준용하여 산출

- 본 추계서는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하여 우선지급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신청
증가율 이외의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최근 산업재해 수
급자 수의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자연증가로 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
우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현재 기준 ‘승인건수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급액’과 ‘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
도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우선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과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입과 지출은 상계하지 않고, 우선 지급한
보험금을 산업재해보상기금으로부터 돌려받을 경우에 따른 재정수입의 증가액은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안비용추계서상 추가재정소요의 산
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표 3] 산재보험 신청건수(추정치): 2026~2030년

(단위: 건)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시나리오1	44,664	44,664	44,664	44,664	44,664
시나리오2	49,130	49,130	49,130	49,130	49,130
시나리오3	52,212	52,212	52,212	52,212	52,212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지급일수) 추계기간 동안 지급일수는 2023년 기준 지급대상(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 급여신청일 30일이 지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평균 지급일수를 준용하여 산출

[표 4] 개정안에 따른 산업재해(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평균 지급일수

(단위: 일)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급여신청일 30일이 지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평균 지급일수	135.4	130.3	139.6	148.9	170.2

자료: 고용노동부

- (지원단가) 2023년 기준 일 평균 지원금액을 토대로 산출

단의 ‘산업재해’ 통계(통계청 승인 통계)와 다를 수 있음

[표 5] 산업재해(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원단가

(단위: 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요양급여	29,500	29,970	28,280	27,960	31,570
휴업급여	58,940	59,850	62,600	64,840	67,950

자료: 고용노동부

- 요양급여는 업무상 사고 및 질병에 대해 지급되므로, 추계기간 동안 지원단가는 2023년 기준 요양급여 지원단가에 2024년 수가인상률(1.98%)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계기간 동안 2024년 기준 수가인상률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6] 요양급여 지원단가(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지원단가	33,483	34,146	34,822	35,511	36,214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2023년 기준 휴업급여 지원단가(67,950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 향후 수급자의 임금변화 및 임금분포의 변화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표 7] 휴업급여 지원단가(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지원단가	75,475	78,329	81,279	84,343	87,583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산재보험 신청건수에 지원단가 및 지급일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개정안은 공단이 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 급여신청일 30일이 지난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산

재보험료를 우선지급하는 내용으로, “요양이나 생계보전 등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요양이나 생계보전 등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각각의 시나리오에 “요양이나 생계보전 등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

① 요양이나 생계보전 등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어 산재보험 급여를 우선지원하는 경우에 대해 2023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자 수의 전 국민 대비 비중(4.9%)을 감안하여 5%를 산출

② 요양이나 생계보전 등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어 산재보험 급여를 우선지원하는 경우의 비중이 10%라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 다만, 개정안은 산재보험 급여의 우선 지급 대상인 “요양이나 생계보전 등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될 경우 총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표 8] 급여신청일 30일이 지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총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요양급여(A1)		2,545	2,596	2,647	2,699	2,753	13,240	2,648
휴업급여(B1)		5,737	5,954	6,179	6,412	6,658	30,940	6,188
합계(C1=A1+B1)		8,283	8,550	8,826	9,111	9,411	44,181	8,836
필요성 고려	5% (D1=C1×5%)	414	428	441	456	471	2,209	442
	10% (E1=C1×10%)	828	855	883	911	941	4,418	884
시나리오2								
요양급여(A2)		2,800	2,855	2,912	2,969	3,028	14,565	2,913
휴업급여(B2)		6,311	6,550	6,797	7,053	7,324	34,034	6,807
합계(C2=A2+B2)		9,111	9,405	9,708	10,022	10,352	48,599	9,720
필요성 고려	5% (D2=C2×5%)	456	470	485	501	518	2,430	486
	10% (E2=C2×10%)	911	941	971	1,002	1,035	4,860	972
시나리오3								
요양급여(A3)		2,976	3,035	3,095	3,156	3,219	15,480	3,096
휴업급여(B3)		6,708	6,962	7,224	7,496	7,784	36,174	7,235
합계(C3=A3+B3)		9,684	9,996	10,319	10,652	11,003	51,654	10,331
필요성 고려	5% (D3=C3×5%)	484	500	516	533	550	2,583	517
	10% (E3=C3×10%)	968	1,000	1,032	1,065	1,100	5,165	1,033

주: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기준선

□ 개정안에 따른 기준선은 최근 산업재해 승인 현황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산업재해 신청건수 중 산업재해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수(이하 ‘승인건수’)와 산업재해로 승인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수(이하 ‘불승인건수’)로 구분하여 추계

- 추가재정소요 산출을 위한 기준선은 ①현재의 제도가 유지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승인건수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급액과 ②‘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임

① 개정안의 시행으로 산재급여 우선 지급 후 최종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급여 지급분은 산재 인정결정 후 지급될 급여를 신청 시로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아님

-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총 신청건수 중 현재의 제도가 유지될 경우에 대한 승인현황은 2023년 기준 승인률을 적용하여 시나리오별로 산출

[표 9] 기존 신청건수에 대한 승인 및 불승인 현황

(단위: 건)

구 분	신청건수 (a)	승인률 (b)	승인 (c=a×b)	불승인 (c=a×(1-b))
급여신청일 30일이 지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44,664	66.9	29,884	14,780

자료: 고용노동부

- 우선 지급한 산재보험료 지급액은 신청건수에 지급일수 및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요양이나 생계보전 등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5%와 10%로 가정하여 산출

[표 10] 현재 기준 승인건수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급액(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요양급여(A1)	1,703	1,737	1,771	1,806	1,842
휴업급여(B1)	3,839	3,984	4,134	4,290	4,455
합계(C1=A1+B1)	5,542	5,721	5,905	6,096	6,297
필요성 고려					
5%(D1=C1×5%)	277	286	295	305	315
10%(E1=C1×10%)	554	572	591	610	630

주: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②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두 번째 기준선은 승인되지 않은 산재보험에 대해 지출된 산재보험 급여에 대한 환수액으로, 이는 현재의 제도가 유지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재 신청건수 중 불승인건수와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건수 중 불승인건수를 토대로 산출

- 산재급여 우선 지급 후 최종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지급된 산재 급여에 대한 지급분은 환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실제 환수되는 금액은 추가 재정소요가 아님
- 다만, 산재급여 우선 지급에 따른 산재보험 급여 지급분 중 환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하 “미환수액”)은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이므로 기준선에서 제외
- 참고로, 본 추계서는 국가의 우선 지급과 산재기금으로부터의 재원 이전 사이의

시차와 관련한 기금 운용으로 인한 기회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며,
 산재보험료의 지급과 환수 사이의 시차로 인한 기회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표 11] 불승인건수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급액(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시나리오1						
요양급여(A1)		842	859	876	893	911
휴업급여(B1)		1,899	1,970	2,045	2,122	2,203
합계(C1=A1+B1)		2,741	2,829	2,921	3,015	3,114
필요성 고려	5%(D1=C1×5%)	137	141	146	151	156
	10%(E1=C1×10%)	274	283	292	302	311
시나리오2						
요양급여(A2)		927	945	964	983	1,002
휴업급여(B2)		2,089	2,168	2,249	2,334	2,424
합계(C2=A2+B2)		3,015	3,112	3,213	3,317	3,426
필요성 고려	5%(D1=C1×5%)	151	156	161	166	171
	10%(E1=C1×10%)	302	311	321	332	343
시나리오3						
요양급여(A3)		985	1,004	1,024	1,044	1,065
휴업급여(B3)		2,220	2,304	2,391	2,481	2,576
합계(C3=A3+B3)		3,205	3,308	3,415	3,525	3,641
필요성 고려	5%(D1=C1×5%)	160	165	171	176	182
	10%(E1=C1×10%)	320	331	341	353	364

주: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환수액은 환수 대상 산재보험료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이므로 현행법⁸⁾에 따른 환수현황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2023년 기준 징수결정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67.3%)을 준용하여 산출
 - － 향후 환수율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8)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이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표 12] 최근 5년간 부당·부정수급액 환수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보험급여 지급액(a)	징수결정액 (b)	환수액 (c)	지급액 대비 환수액 비율(d)	징수결정액 대비 환수액 비율(e=c/b)
2019	5,529,360	18,795	8,224	0.15%	43.8%
2020	5,996,819	12,637	6,716	0.11%	53.2%
2021	6,452,940	8,960	6,648	0.10%	74.2%
2022	6,686,486	9,103	6,324	0.09%	69.5%
2023	7,284,941	13,384	9,005	0.12%	67.3%

주: 1. 징수결정액은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라 해당연도에 징수결정한 보험급여액에서 2024년 11월 말 기준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징수결정 취소된 건수 및 금액이 제외된 금액임

2. 환수액은 해당연도 지급액에 대한 해당연도 환수액이 아닌 해당연도 징수결정액에 대한 2024년 11월 말 기준 누적 환수액임

자료: 고용노동부

[표 13] 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불승인건수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급액(A1)	2,741	2,829	2,921	3,015	3,114	14,620	2,924
환수액(B1=A1×67.3%)	1,844	1,904	1,965	2,029	2,095	9,837	1,967
시나리오2							
불승인건수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급액(A2)	3,015	3,112	3,213	3,317	3,426	16,082	3,216
환수액(B2=A2×67.3%)	2,029	2,094	2,162	2,231	2,305	10,821	2,164
시나리오3							
불승인건수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급액(A3)	3,205	3,308	3,415	3,525	3,641	17,094	3,419
환수액(B3=A3×67.3%)	2,156	2,226	2,298	2,372	2,450	11,501	2,300

주: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공단이 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 급여신청일 30일이 지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산재보험료를 우선지급할 경우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 (시나리오1) 우선보장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신청자의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897억원, 2030년에 1,019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4,783억원(연평균 957억원)으로 추계됨

- 시나리오1에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산재급여 우선 지급 후 최종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미환수액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환수율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시나리오1에서 “요양이나 생계보전 등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을 고려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5~90억원, 2030년에 51~102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239~478억원(연평균 48~96억원)으로 축소되며, 개정안의 시행으로 이에 대한 하위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경우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시나리오2)** 우선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산업재해 신청이 증가하는 경우이며, 이 중 시나리오2는 산업재해 신청자의 수가 10% 증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로 2026년에 1,541억원, 2030년에 1,750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8,218억원(연평균 1,644억원)으로 추계됨
 - 시나리오2에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1과 마찬가지로 산재급여 우선 지급 후 최종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미환수액이나, 시나리오2는 시나리오1과 달리 우선보장제도의 도입에 따른 산업재해 신청 물량이 확대되기 때문에 미환수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2에서 “요양이나 생계보전 등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을 고려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7~154억원, 2030년에 88~175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411~822억원(연평균 82~164억원)으로 추계됨
- **(시나리오3)** 시나리오3은 우선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산업재해 신청자의 수가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산재 신청 사업주 날인제 폐지 도입에 따른 신청증가율(16.9%⁹⁾)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로, 이때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1,986억원, 2030년에 2,256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조 593억원(연평균 2,119억원)으로 추계됨
 - 시나리오3에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산재급여 우선 지급 후 최종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미환수액으로, 시나리오3은 산재 신청 사업주 날인제 폐지 도입에 따른 신청증가율을 준용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장래에 발생할 신청증가

9) 자료: 고용노동부

주: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 1회차 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대한 통계가 아닌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접수에 따른 처리현황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통계청 승인 통계)와 다를 수 있음

율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3에서 “요양이나 생계보전 등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을 고려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에 99~199억원, 2030년에 113~226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530~1,059억원(연평균 106~212억원)으로 추계됨

[표 1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총재정소요(A1)		8,283	8,550	8,826	9,111	9,411	44,181	8,836
기 준 선	현재 기준 승인건수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급액(B1)	5,542	5,721	5,905	6,096	6,297	29,561	5,912
	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C1)	1,844	1,904	1,965	2,029	2,095	9,837	1,967
	소계(D1=B1+C1)	7,386	7,624	7,870	8,125	8,392	39,397	7,879
	추가재정소요(E1=A1-D1)	897	926	956	986	1,019	4,783	957
필요성 고려	5%(F1=E1×5%)	45	46	48	49	51	239	48
	10%(G1=E1×10%)	90	93	96	99	102	478	96
시나리오2								
총재정소요(A2)		9,111	9,405	9,708	10,022	10,352	48,599	9,720
기 준 선	현재 기준 승인건수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급액(B1)	5,542	5,721	5,905	6,096	6,297	29,561	5,912
	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C2)	2,029	2,094	2,162	2,231	2,305	10,821	2,164
	소계(D2=B2+C2)	7,570	7,815	8,067	8,328	8,602	40,381	8,076
	추가재정소요(E2=A2-D2)	1,541	1,590	1,642	1,695	1,750	8,218	1,644
필요성 고려	5%(F2=E2×5%)	77	80	82	85	88	411	82
	10%(G2=E2×10%)	154	159	164	169	175	822	164
시나리오3								
총재정소요(A3)		9,684	9,996	10,319	10,652	11,003	51,654	10,331
기 준 선	현재 기준 승인건수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급액(B1)	5,542	5,721	5,905	6,096	6,297	29,561	5,912
	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C3)	2,156	2,226	2,298	2,372	2,450	11,501	2,300
	소계(D3=B3+C3)	7,698	7,947	8,203	8,468	8,746	41,062	8,212
	추가재정소요(E3=A3-D3)	1,986	2,050	2,116	2,184	2,256	10,593	2,119
필요성 고려	5%(F3=E3×5%)	99	102	106	109	113	530	106
	10%(G3=E3×10%)	199	205	212	218	226	1,059	212

- 주: 1. 개정안의 도입에 따른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는 산재급여 우선 지급 후 최종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미환수액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향후 산재보험의 신청건수의 변화와 승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개정안의 도입에 따른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는 산재급여 우선 지급 후 최종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미환수액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환수율의 변화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산재 신청증가율은 증가하지 않는 경우, 10% 증가하는 경우, 산재 신청 사업주 날인제 폐지 도입에 따른 신청증가율을 준용하여 산출하였으므로, 향후 산재보험 급여에 대한 신청증가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5. 향후 수가인상률의 변화 및 수급자의 임금변화 및 임금분포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6. 국가의 우선 지급과 산재기금으로부터의 재원 이전 사이의 시차와 관련한 기금 운용으로 인한 기회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본 추계서는 산재보험료의 지급과 환수 사이의 시차로 인한 기회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7. 본 추계서의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급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하여 우선지급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신청 증가율 이외의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최근 산업재해 수급자 수의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자연증가로 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8 “요양이나 생계보전 등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향후 수급자의 임금변화 및 임금분포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산재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면, 추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승인율, 회수 및 환수 실적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국가의 우선 지급과 산재기금으로부터의 재원 이전 사이의 시차에 따라 기금 운용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결과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급여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하여 신청 증가율 이외의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최근 산업재해 수급자 수의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자연증가로 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은 산재보험 급여의 우선 지급 대상인 “요양이나 생계보전 등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경우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assembly.go.kr